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5. 01. 19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6장 제27조에 근거하고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등)** 가맹단체 당해 종목 및 장애유형별 체육의 대표성을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통괄 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 가맹단체가 영문 명칭을 포함하여 명칭을 정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협회(연맹)라 칭한다.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 제2장 사 업

### 제3조(목적 및 사업)

① 경기단체는 각 소관 경기종목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괄·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연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7. 해당 경기자 및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0. 해당 경기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체육단체는 각 장애유형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스포츠기구의 대표기구로써 해당 장애유형의 시도별 기구와 대외 협력을 통해 해당 장애영역의 스포츠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경기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장애유형별 국내·외 종합대회를 개최 또는 지원 할 수 있고, 우수선수·지도자 양성 등 해당 장애영역 스포츠를 널리 보급 함을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국내·외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
  4.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시도별 기구와의 교류
  5.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7.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8.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9.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별 경기단체, 종목별경기단체와의 업무교류
  10. 해당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의 위임)

-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경기단체 소관범위 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중앙경기단체와 협조하여 주최하여야 한다.
- ② 체육단체는 전국규모의 장애유형별 종합대회를 종목별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주최하여야 한다.

### 제3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가맹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시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무)**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장애인체육회 규약·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대한장애인경기연맹·대한장애인체육기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경기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가맹 단체 및 인정단체)**

- ① 준가맹 단체는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인정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인정단체는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단체 지도육성)**

-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 규정 등의 위반, 가맹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단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 ④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⑤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01.10. 개정)
- ③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7.01.10. 개정)
  1. 경기단체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 으로 구성한다.

2. 체육단체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 제10조(임기)

-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장애인체육회 정기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 선출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 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 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에는 신입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④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⑤ 가맹경기단체 회자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01.10. 개정)

###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① 회장은 경기단체에서 추대한다.
- ② 가맹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④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⑥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이나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2017.01.10. 개정)
- ⑦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나 직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2017.01.10. 개정)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위촉임원)

- ① 고문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종목별 가맹단체의 이사 또는 선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신규 보급종목이나 종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제14조(선임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가맹단체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당해 가맹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 제5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중요 사항

#### 제1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8조(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사회 소집특례)

-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이사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6장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 제20조(설치)

- ① 가맹단체는 당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읍·면·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가맹단체 지부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정한다.
- ③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는 그 사무소를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규약은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가맹단체를 경유하여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⑤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선임임원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선임임원 인준 시 해당 가맹단체에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 ⑥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는 해당 가맹단체에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가맹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⑧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임원이 가맹단체 또는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맹단체 상별규정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상별규정에 따른다.
- ⑨ 전기 8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본 규정,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 **제21조(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이사회)**

- ①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각 읍·면·동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
  - 2.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이사 각1인
- ② 전항에 의한 이사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 1. 등록단체(팀)별 이사 약간인
- ③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④ 제2항 제1호의 등록 단체별 이사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22조(자산)** 가맹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2. 기금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회비
- 5.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수익금

### 제23조(자산의 구분)

- ① 가맹단체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가맹단체의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24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25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7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9장 보 칙

**제30조(규약 등의 변경)**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1.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5.0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1.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01.10.)